허가조건

- 제1조(사용 목적)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물품 및 용역 판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**제2조(사용허가 기간)** ① 사용허가 기간은 5년(. . .부터 . . .까지)으로 한다. 다만, 1회에 한하여 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 - ②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을 원하는 사용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3조(사용료) ① 연간사용료는 금_____원으로 하고(부가가치세 포함),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공단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1. 첫째 연도 이후 사용료를 재산정하는 경우
 - 2.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
 - 3.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
- **제4조(관리비)** ① 사용자는 공단이 산정한 관리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연체할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 관리비는 월별로 계산하되,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사용료 등의 반환)**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 이후의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.
- **제6조(인·허가 이행)** ① 사용자는 영업 개시에 따른 사업자 등록, 인·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사용자는 인·허가 등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- **제7조(손해보험 등)** ① 사용자는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고, 공단이 요구하는 금액 이상 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공단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③ 사용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한 각종 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영업 및 휴업)** ①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나 공단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휴장한 경우에는 휴장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감액하여야 한다.
- **제9조(준수사항)**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(이하 "허가재산"이라 한다)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②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구조변경, 추가시설 설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

받아야 하며,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- ③ 사용자는 공단이 안전, 위생, 소방 등의 점검을 위하여 허가재산에 출입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단은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사용자에게 출입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사용자는 허가재산에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, 공단 규정 등과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관리·감독에 협조하여 야 한다.
- ⑥ 사용자는 주소,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금지사항) 사용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1. 허가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
 - 2. 허가재산에 대하여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
 - 3. 영업업종의 변경(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기준)
 - 4.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(구조변경, 인테리어, 추가시설 설치 등)
 - 5. 허가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
 - 6. 그 밖에 공단에서 금지하는 행위
- **제11조(허가 취소)** ① 공단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.
 - 1. 「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」제4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2.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
 - 3.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
 - 4. 허가재산이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
 - ② 공단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
 - 2. 지하도상가 점포 또는 부대시설을 고의 · 과실로 파손한 경우
 - 3. 제6조의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인·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
 - 4. 점포 전대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·자료 등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 는 경우
 - 5.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서 등 확인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
 - 6. 대구시·공단의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·점검에 불응하는 경우
 - 7. 제10조제3호 내지 제6호를 위반한 경우
 - 8.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30일 이상 영업을 중지한 경우(점포 내부를 점등하지 않거나 문이 잠겨있는 경우 등)
 - 9.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구시·공단의 상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- 10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11. 제9조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대구시·공단의 사용허가 업무와 지하도상가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12.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사용허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
- **제12조(허가 취소요청)**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받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재산 반환) ①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단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였거나 원상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 원상회복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**제14조(변상금)**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거 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.
- **제15조(연고권 및 권리금 불인정)**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자의 연고권이나 권리금은 일체 인정 하지 아니한다.
- 제16조(손해배상 책임)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다.
- **제17조(공단의 면책)** ① 사용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공단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.
 - ② 공단은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보상한다.
 - ③ 공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**제18조(관계법령 적용 등)** ① 본 사용허가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입찰 시 확약한 입찰유의서, 일반조건 등은 본 허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**제19조(관할법원)** 공단과 사용자 간 사용허가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특별조건

제1조(제재사항) 공단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공단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단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. 안전선 미준수(상품, 적치물, 매대, 계산기 등)
- 2. 점포 내 취사·취침 등 숙식행위
- 3. 점포 내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
- 4. 통행에 방해되거나 소방시설 이용에 장애가 되는 점포 물건 방치 또는 적치
- 5. 지하도상가 내 음주·흡연·도박·고성방가 등 행위
- 6. 정당한 사유 없이 상거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상품 교환·환불·신용카드 거부 행위
- 7. 미풍양속에 반하는 호객·강매 행위
- 8. 세탁물 또는 식기류 등을 통로에 방치하여 악취발생 또는 미관저해
- 9. 점포 내에서 업종과 무관한 음식물 등 조리행위로 악취발생 또는 미관저해
- 10. 폐기물·부패물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 또는 시간에 폐기하는 경우
- 11. 스피커, 확성기를 사용한 고객유인 행위
- 12. 공단에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
- 13. 부설주차장 내 상품 또는 적치물 방치
- 14.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지하도상가 관리, 화재예방,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시정요구

※ 본인은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자로서 위의 허가조건 및 특별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 또한 본 사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자료 등에 위조 또는 허위가 있거나 점포에 관해 전대·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및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.

202 . . .

사 용 자: _____(서명 또는 인)